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대비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RISE 머니마켓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(채권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15. 생략</p> <p>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</p> <p>17. ~ 19. 생략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~ 15. 좌동</p> <p>16. “투자신탁분배금”이라 함은 <u>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</u>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<u>한도로 하여</u>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. <u>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다.</u></p> <p>17. ~ 19. 좌동</p>
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6. 생략</p> <p>7.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	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6. 좌동</p> <p>7. 삭제</p>
	<p>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1. ~ 2. 생략</p> <p>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</p>	<p>제33조(투자신탁분배금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<u>분배한다</u>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1. ~ 2. 좌동</p> <p>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다</p>

	<p>에따라 계산되는 이익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</p> <p>제34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,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지급기준일: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(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)</p> <p>2. ~ 4. 생략</p> <p>②~④생략</p>	<p>만,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은 제외한다]</p> <p>(신설) 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</p> <p>(신설)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)을 초과할 수 있다.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.</p> <p>제34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,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지급기준일: 매년 12월 15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. 다만,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</p> <p>2. ~ 4. 좌동</p> <p>②~④좌동</p>
	<p>제36조(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 ①이익분배금,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</p>	<p>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)</p> <p>①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</p> <p>②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</p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2. 변경(예정)일: 2025년 12월 09일(화)